제 4 출 방송사업자의 권리

1. 방송사업자(제2조 제9호)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한다.

2. 발생과 보호기간

(1) 발생(제86조 제1항 제3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보호기간(제86조 제2항 제3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① 복제권(제84조)
- ②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③ 공연권(제85조의2)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